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26호(2021) 관련)

2022. 2. 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4:10~18:16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원장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의결 제6호 회피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26호(2021)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쟁점이 특수관계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는 ㈜△△△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두 아들은 ㈜○○○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과 ㈜○○○은 특수관계자가 맞다고 생각되므로 검찰통보 원안에 동의함.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여지없이 특수관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함. 이 사안을 보면 2019년에 지분이 확보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되고 그 내역이 주석에 기재되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유용 이런 부분이 회사가 통합됨으로써 그런 원인행위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과연 검찰통보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통보만 제외해서 상장실질심사는 면제시켜 주겠느냐는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음.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통보보다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위원) 기본적으로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음. 다만, 후속적인 시장조치로 인해서 실제 잘못을 행한 사람들 외에, 결국 장시간 동안 매매거래정지가 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소액주주들인데 지금 이 시스템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음. 또, 이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회계적으로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시기 측면에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고민이 있음.

○ (위원) 저는 금감원 원안에 동의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본 후에 결론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참여자) 당사자, 회사에 대한 고발 조치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맞는데 이것이 고발되었다, 통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음.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향후에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듦.

○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어떠한지?

- (보고자) 통상적으로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계속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함.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나 현금 영업흐름이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심사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검찰고발·통보되는 경우 실질심사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을 하면서 회사가 건전한 회사면 바로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경우도 왕왕 있음.

○ (위원) 실제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인해서 검찰에 통보된 몇 가지 과거 사례를 검토해 보고 논의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